변호인에서 피고인으로

황 인 철

*황인철님은 1974년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한 이래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양심범들을 위해 애쓰다가 1990년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셨다.

피고인은 무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강신옥 변호사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과 법정 모욕 등 피의 사건, 세상에서 흔히 강신옥 변호사사건이라고 일컫던 사건은 1988년 3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0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형사 제1부(재판장 최공웅 판사)가 선고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일단 현실의 사건에서 역사의 기록으로 넘겨졌다.

이 날 선고 법정에는 방청인도 몇 사람 되지 않는 가운데 강변호사는 오히려 밝은 표정이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과, 이 확신이 이제는 저버리지 않아도 좋을 그런 때도 된 것 아닌가 히는 안도 때문이었으리라.

사실 우리는 그 동안 재판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자주 배반을 경험하며 한 세월을 살아왔다. 긴조(緊措)시대, 집시(集示)시대, 국보(國保)시대를 거쳐 살아오면서 우리 변호사들은 재판이란 한낱 요식 절차로 전락하여버렸다는 비판 앞에 변명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었고, 심지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이 환송 판결 취지대로 귀결되는 이른바 시국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일이 없었다.

그러니 강변호사 사건도 비록 대법원에서 환송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확신과 안도를 아울러 가질 수 있었겠는가. 확실히 시대가 변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단호하게 선언한 최공웅 재판장의 선고는 강변호사가 그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14년을 지내면서 겪어온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선언임과 동시에 역사의 거역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새롭게 탄생할 사법부를 예고하는 신호이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다.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선 강변호사는 TV 카메라 앞에서 환하

게 웃으면서 이렇게 외쳤다.

"이 당연한 판결을 얻는 데 14년이 걸렸습니다."

긴급조치 1·4호와 민청학련 사건

강변호사 사건은 강변호사가 1974년 6월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지하 등 10명에 대한 변론을 맡게 되면서 발단된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1974년은 유신헌법 아래에서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것이 선포되면서 암울한 긴조시대를 연 해였다.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와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행위를 금하고, 그에 위반하면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엄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에 따라 1974년 1월 8일에 선포되었다.

이 조치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절대 권력을 다져놓은, 이른바 유신헌법이 1972년 12월 27일의 공포 시행 직후부터 국민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1973년 부활절 박형규 목사의 남산 야외음악당 사건을 시작으로 1973년 10월 2일의 서울대 문리대 시위로 이어져 12월 초순까지 2개월 남짓 동안 전국 각 대학에서 시위와 농성, 시험거부 등 대대적인 반유신 운동이 벌어진 바 있었다.

이 사태에 대하여 박정권은 집시법을 적용한 대량 구속과 대량 제적으로 대처하다가, 연말에 접어들어 이 운동이 지식인과 사회 원로들의 헌법 개정 청원운동으로 확산되자, 이듬해 1월 8일 선포된 것이 위 긴급조치 1호인 것이다.

그러나 이 긴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반유신 운동은 새학기를 겨냥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준비되었던 것이니, 서울대의 이철·유

인태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연결을 갖추고 4월 3일을 기하여 전국 규모의 유신 반대 시위를 준비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건이 바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즉 민청학련 사건이었다. 당국은 사전에 이 정보를 탐지하고 3월 말 경부터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벌였지만, 4월 3일 드디어 서울의 거의 전 대학에서 일제히 데모가 터지자 정부는 그날 오후 10시를 기하여 서슬퍼런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게 된다.

긴급조치 제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구성원과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작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소지·배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이에 위반하거나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운동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였던 것이다. 이 긴급조치가 선포된 전후에 걸쳐서 1,024명이 연행 조사를 받았고, 그중 203명이 구속되었으며, 그중에는 윤보선 전대통령, 지학순 주교, 김찬국·김동길 교수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1차로 54명이 비상군법회의에 기소되었는데, 그 중 인혁당 사건의 22명을 제한 나머지 32명이 강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하였던 민청학련 사건이었다.

한편 박정권은 긴급조치 1호와 동시에 긴급조치 2호를 선포하고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하고, 22명의 심판관과 15명의 검찰관을 임명하는데, 그 중에는 군장성과 법무관 외에도 많은 판사와 검사

가 임명되어 긴급조치의 시행에 협력한다.

미리 계획된 초사법적 조치

강변호사 사건의 경과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이외에 변호인단과 군법회의 당국 사이에 재판 진행과정에서 쌓여간 대립과 갈등의 실상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강변호사 본인의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민청학련 사건은 공소장 자체가 600여 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서, 요약하면 민청학련은 반국가단체로서 피고인들은 이 단체를 구성하여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정부 전복을 기도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함으로써 내란음모,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였고, 또한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방대하고 복잡한 공소장을 변호인들에게도 첫 공판 기일 며칠 전에야 비로소 교부하여 주고, 접견 역시 허락하지 않다가 1974년 6월 15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다는 통지를 하여 놓고 6월 14일 오후에야 변호인 접견을 허락하였던 것인데, 워낙 많은 피고인을 맡고 보니 공소사실에 관한 협의는 전혀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공판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모두 긴급조치 1호 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죄 등 모든 나머지 사실을 부인했다. 긴급조치 위반 부분에 대하여서도 유신헌법은 장기집권을 위한 것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고 헌법이 너무 독재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지극히 위험한 일이므로, 진실로 우리나라를 위하여는 헌법상 개악된 부분은 개정되어 민주 헌법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란 것을 그들의 애국적 신념이라

하였다.

그리고 비록 긴급조치 1호가 이 헌법에 대한 반대를 금하였고, 긴급조치 자체에 대한 비방을 형사죄로 규정하여 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바로잡는 데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 진리라고 보는 것을 위해 학생들이 압력단체로서 결속되어 학생운동을 통해 여론이 그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넣으려고 한 것뿐이다.

이와같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면 차라리 구속되어서라도 법정에서 바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주장하고, 그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추호도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정부를 타도하려 음모한 적도 없다. 다만 뜻있는 대학생과 기독교인들로서 기성세대들이 무기력하여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므로 하는 수 없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려 하였고, 학생운동으로 정부에 의사를 호소해 보려던 것이 자기들 행동의 전부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가 거의 전부여서 이런 유의 사건들이 으레 그렇듯이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자신들은 평화적인 데모를 위하여 서로 연락한 사실만 인정하고 반국가단체 구성,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 또는 공산주의 국가 건설 등의 부분은 검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신문할 때 답변을 무시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데모를 하려 하였던 객관적 사실 위에 덧적어 넣고 무인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수사과정 중에 중앙정보부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한 끝이라 공포감으로 거

절하지 못하고 강요된 상태에서 무인해 주었을 뿐이라고 한결같이 진술하였다.

한편 참고인 조서는 변호인들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게 되자, 검찰관이 증인을 무려 6, 70명이나 신청하여 모두 채택되어 소환 신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증인신문 기간에는 피고인들을 소환조차 하지 않아 참여를 시키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변호인들의 강력한 이의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증인 신문에서는 처음 증인 10여 명에게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으로 모든 증인이 검찰 앞에서 조사받을 때 데모하려던 사실 이외는 모두 부인하였는데, 검사들이 참고인 진술과는 반대로 반국가 단체 구성이니 폭력 전복이니 임의로 적어넣고 무인 또는 날인을 강요한 것이라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자 나머지 증인에 대하여는 검찰관이 무인 사실 여부만 직접 신문으로 묻고, 신문을 마치고는 변호인도 무인이나 날인한 사실에 대한 반대 신문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의하여 법무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져 변호인들은 이의 · 항의 또는 설득 등을 펴다가 역부족으로 모두 퇴임하고 말았었다.

나머지 증인 60여 명은 결국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 참여도 없는 사이 조서의 무인 여부만 신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마쳐졌고, 그리하여 변호인측이 그 다음 공판에서 증거 조사 방법에 관한 강력한 이의와 함께 피고인을 위한 증인을 신청하였던 바, 다음날까지 채부를 결정 고지하겠다고 하더니 다음날인 7월 9일 오후에 속개된 공판에서는 번호인 신청 증인을 모두 기각하고 그 자리에서 증거 조사를 마친다 선언하고 검찰관의 의견 진술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1974년 7월 9일 바로 이 날이 강변호사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이때까지 피고인들에게는 가족 면회가 일체 금지되고 있었고, 방청도 서슬퍼런 육본 내에 엄격한 출입 통제를 거쳐서 직계 가족 한 사람씩만

허용되었을 뿐 아니라 변호인의 접견도 첫 공판 전날 오후에 꼭 한 번, 기록 열람도 꼭 하루만 허용되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 반대 신문 때부터 제한과 제지가 빈발하다가 급기야 피고인과 변호인 참여없는 증인 신문과 변호인 신청 증인이 전부 기각을 당하였던 바, 6월 15일 첫 공판이 열린 이래 거의 매일 아침 9시에 재판이 속개되어 다른 일 제쳐놓고 군법회의에 나가 공동변호인으로 관여하였던 변호인단은 그때마다 강력하게 이의하고 항의하며 적법절차 준수를 촉구하였던 것이다.

군법회의 재판이란 당시 국방부 법무담당관인 이모 장군의 지휘 아래 군사작전처럼 일사분란하게 강행되고 있던 터이므로 변호인의 이의가 받아들여질 리 없고, 오히려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조속히 중형으로 종결시킬 계획을 방해하는 무리들로 취급되는 판이었다. 여기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현직에서 파견된 판사나 검사들이 수사과정에서나 재판과정에서 편의주의적인 잔꾀나 탈법을 서슴지 않으면서, 군당국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로 비쳐져 변호인들이 받은 배신감과 실망 또한 큰 것이었다.

이런 상황 아래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관여 검찰관(송종의 · 최명부 · 강철선 검사)의 구형은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김지하 등 7명에게 사형, 나머지 무기 등 최하가 15년인 중형이었던 것이니, 변호인들이 당황하고 흥분하면서 변론에 임할 수밖에 없었음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다.

강변호사가 이 날의 변론이 문제되어 구속 기소된 뒤 변호사회 단위의 대책활동 일환으로 변호사회 임원들이 고위 당국자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입을 모아 강변호사의 구속은 초사법적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이 선포한 긴급조치와 그에 의하여 설치된 군법회의에 누가 감히 이의하고 대항해 싸운단 말인가 하는 발상 아래 법무 담당관 중심

으로 어느 변호사건 걸려들기만 하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의지와 사전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지금껏 가시지 않는다.

변론이 죄가 되다

1974년 7월 9일 오후 늦게 변호인들이 사전에 예상하고 미처 준비도 못한 사이 기습적으로 결심이 되고 역시 예상밖으로 사형 구형이 7명이나 되자 변호인들은 당황하고 흥분되기도 하였다. 영구 집권을 위한 독재체제를 다지는 데 혈안이 된 박대통령이 학생운동 세력에게 사형의 위협으로 권총을 겨눠 결전을 선언하더니, 드디어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이 순수하고 애국적인 어린 학생들을 정말 죽이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섬뜩한 공포감과 이런 비극이 모두 우리 기성세대 탓이지, 저 어린 학생들 탓은 아닌데 그들의 희생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느냐는 비장감마저 갖고 변론에 임하게 된다.

담당한 피고인의 순서에 따라 필자가 먼저 개괄적인 법률론·사실론에 관한 변론을 하였고, 이어 홍성우 변호사가 주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중점을 두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변론을 하자, 심판관 제지가 한번 있었으나 무사히 마쳤다.

이어 세번째로 강변호사가 등단하여 한 변론이 문제로 되어 문명사회에서는 그 유례가 없는 변론중 변호사 구속이라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사실은 1974년 7월 「뉴욕 타임스」의 1면 기사로 보도된 몇 달 뒤에야 정기국회에서 법무장관의 답변을 통해 국민에게 비로소 알려지면서 14년, 정확하게 13년 8개월만에 종결되는 '강신옥 변호사 사건'이 되는 것이다.

강변호사의 변론 내용은 서울고법의 판결중 공소사실의 요약 대목에 일부가 인용되 있는 터로서, 본인의 항소이유서에 그 내용과 취지가

소상하게 밝혀져 있으므로(서울제일변호사회 간행 「법조시보」, 1975년 1·2월호중 필자의 「강신옥 회원에 대한 비상군재(상·하)」 참조), 여기에서 다시 옮기는 번거로움을 피하겠다. 먼저 재판에 관여하여 변론하는 심정을 밝히면서 법이 권력의 시녀, 정치의 시녀로 전락함을 경고하고 소송법상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재판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이어 검찰관이 애국 학생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을 구형하고 있으니, 이는 사법살인행위라 경고하는 대목에서 법무사로부터 가벼운 주의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독일 판례를 인용한 저항권 얘기를 마치고 반대하는 자의 차원높은 애국심에 대하여 미국의 울브라이트 상원의원이 미 의회에서 한 월남전 반대 연설에서 인용한 제정러시아 시대의 역사학자 차다예프의 '미친 자의 변사'에 관하여 말을 시작하려 하자 재판장이 휴정을 명한다.

속개된 법정에서 김지하의 「오적」에 대한 간단한 변론만으로 강변호사는 변론을 마쳤던 것인데, 재판장이 다시 휴정을 선언한 사이 법정에 재정하던 중앙정보부원에 의하여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법정 옆 사무실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러는 동안 재판은 속개되어 강·홍 두 변호사가 법정에서 연행되는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도 어떤 경우에나 피고인을 위한 변론은 포기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사명을 다하고자 이세중·임광규·박승서 변호사 순으로 변론을 모두 마치게 된다.

강변호사와 홍변호사는 법정 옆 사무실에서 약 1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하였다가 밤 11시 경 자택에서 다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이틀 후인 7월 11일 오후에 일단 석방된다. 때에 따라 야만적인 구타가 동반된 조사였다.

그러다가 7월 15일 오후 4시 경 강변호사 혼자 무교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정보부에 연행, 정식으로 구속되어 동일로 서울구치

소에 수감되었고, 7월 1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기다리던 중 대통령긴급조치 1·4호가 긴급조치 5호로 해제되기 하루 전인 8월 22일 대통령긴급조치 1·4호 위반과 법정모욕죄로 구속 기소되기에 이른다.

재판 경과

I.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관 : 재판장 육군중장 유병현
심판관 육군소장 강신탁
판 사 신정철
검 사 송병철
법무사 육군중령 황종태
검찰관 : 육군소령 이근일
변호인 : 이병린 등 우리나라 재판 사상 최대인 99명

1회 공판 기일은 1974년 8월 30일 오후 3시 육군본부 법정에서 개정되어 인정신문 직후 고재호 변호사가 모두진술과 함께 변호인 활동은 헌법 해석상 당연히 면책될 뿐 아니라, 군법회의법 제28조 소정의 원칙 조항에 비추어 본안 심리에 앞서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는 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기각되고 심리에 들어가 검찰관 직접 신문과 박승서·김동환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강변호사는 당시의 변론 경위와 심정, 변호인의 책무, 저항권 이론에 대한 신념 및 변론 활동의 면책성에 관한 소신 등을 명쾌하게 밝혔다.

증거 조사를 위하여 연행된 9월 2일 오후의 공판 기일에서는 김제

형 변호사가 증거인부와 함께 변론 당시 법무사인 김영범 육군중령 등 증인 3명과 민청학련 사건 기록 검증 등 증거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채택되지 아니한 채 검찰측 신청 증인을 재정 증인으로 신문하는 이내 결심,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구형되었다.

이어 이병린 · 박승서 · 이재성 · 조준희 변호사의 순서로 약 3시간여에 걸쳐서 개진된 변론에서는 강변호사 사건이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변호 활동이 문제된 사건으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중대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공소 사실이 일부 변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변호인의 직무와 면책성, 자연법적인 저항권 이론 등에 관한 진지한 변론이 있었다.

끝으로 강변호사의, 변호인의 변론 자체가 문제된 예는 자유세계에서는 없다, 인간의 역사에 비추어 인간의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인간 지혜로 재판제도가 마련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재판제도 아래에서 한쪽 당사자가 자유롭지 않다면 재판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 아니냐, 자신은 전인격과 양심에 비추어 마지막 변론의 기회에 그 책무를 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요지의 최후진술을 하였다.

9월 4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되었다.

II. 비상고등군법회의

재판관 : 재판장 육군대장 이세호
심판관 육군소장 윤성민
육군소장 차규헌
판 사 문영극

판　　사 박정도

검　　사 정태균

법무사 : 육군대령 이진우

검찰관 : 검사 문형철

변호인 : 박승서 등 61명

1974년 10월 7일 오후 2시에 육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들의 피고인 신문, 원심에서와 같은 증거 신청, 한승헌 재정 증인 신청, 원심 증인 정남주에 대한 조서 이의 등이 모조리 기각된 채 고재호 변호사의 대표 변론만으로 결심되었고, 10월 11일 항소 기각.

III. 대법원

당초 형사제1부에 배당되어 김윤행 대법원 판사 주심 사건이 되었던 것인데,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라 정부 당국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미루어온 일만으로도 특별한 취급이었다 할 것이었는 바, 변호인은 주운화 변호사 등 85명이 관여하여 박승서 변호사가 기초한 상고이유서를 1974년 12월 21일에 제출.

대법원은 그로부터 만 10년이 지난 1985년 1월 29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다. 대법원 74도 3501 사건의 이 판결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덕주 · 이회창 두 대법원 판사의 의견과 이회창 대법원 판사의 의견에 대한 전상석 주심 대법원 판사의 의견까지 곁들여져 이채롭다.

긴급조치 1 · 4호를 비방하여 변호사법 14조 소정의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케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여 우리를 긴장시켰던 것이나, 다행히 대법원 판결까지는 징계 절차가 정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계를 당하거나 악명 높은 변호사업무정지처분도 당하지 아니한 채 미결 14년 동안 변호사 업무는 계속할 수 있었다.

다만 강변호사가 스스로 변호인석에서 피고인석으로 내려앉으면서까지 무고함을 변호하였던 피고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1974년 2월 15일 조치로 석방되고, 그후 사면 · 복권이 되었으나 국선변호인으로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변호한 여정남 피고인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1975. 4. 8) 새벽에 인혁당 관계자 7명과 함께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당하여 강변호사에게는 아직까지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다.